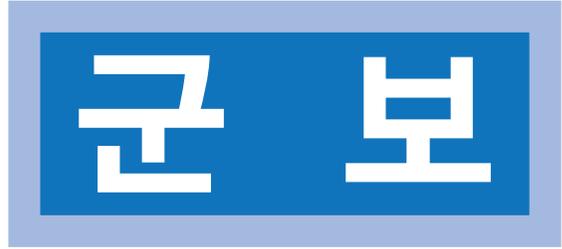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482호 2022. 3. 15(화)

규 칙

장수군 규칙 제1194호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장수군 규칙 제1195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5
장수군 규칙 제1196호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2-253호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장수군 공고 제2022-288호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30
장수군 공고 제2022-299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37
장수군 공고 제2022-300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53

고 시

장수군 고시 제2022-40호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67
장수군 고시 제2022-41호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68
장수군 고시 제2022-42호	장수 군계획시설(의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69
장수군 고시 제2022-44 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고시	74

회 람								
--------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규칙 제1194호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을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로, “실·과장”을 “국, 실,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으로, “사고가 있는 때에는 장수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장수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사법무팀원은”을 “법무업무 담당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과 관련된 소관 사무에 대한”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를 “조례공포안.”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예산안·결산안 등 그 밖에 의회”를 “예산안·결산 등 장수군의회”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7일전까지 기획조정실에”를 “7일 전까지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례공포안 기타”를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로,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에 부치는 의안으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간사1인”을 “간사 1명”으로, “감사법무팀장”을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조례·규칙심의회 구성 및 기능을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제명 띄어쓰기)
 - “장수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을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으로 함
- 장수군 조직개편으로 국 신설에 따른 위원회 구성 변경 (제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주민조례발안 관련 규정 삭제 (제2조 및 제6조)
-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근거 마련 (제5조)
- 「법제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장수군 규칙 제1195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 급		기 관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 건 의료원	농업 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총계			573	321	17	74	35	14	112(1)
정무직계			1	1					
정무	군 수		1	1					
별정직계			1	1					
6급	비 서		1	1					
일반직계			535	316	17	74	2	14	112(1)
4급	소 계		4	3	0	1	0	0	0
	서기관·기술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1			1			
4·5급	소 계		1						1
	서기관·기술서 기관·행정		1						1
5급	소 계		25	14	2	2	0	1	6
	행 정		2	1	1				
	행정·농업		3	2	1				
	행정·농지		1	1					
	행정·농업·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시설		4	4					
	행정·환경·시 설		2	1				1	
	행정·사회복지 ·농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수 의		1	1					
	행정·농업·시 설·사회복지		1	1					1
	행정·농업·사 회복지		1	1					1
행정·농업·사		1						1	

	회복지·환경							
	행정·농업·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간호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의무·보건·간호·의료기술	1			1			
6급	소 계	115	74	3	10	0	3	25
	행 정	10	9	1				
	녹 지	2	2					
	시 설	4	4					
	보건진료	3			3			
	행정·세무	4	4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6	6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8	8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12	10				2	
	행정·농업·수의	1	1					
	환경·시설	1					1	
	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9	4	2				3
	행정·세무·시설	4	3					1
	행정·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농업·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시설·	2	2						

	공업							
	행정·전산·방송통신	3	2					1
	행정·농업·세무	8						8
	행정·농업·사회복지	3						3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행정·전산·농업·녹지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행정·사무운영·통신운영	1	1					
	행정·농업·기계운영	1	1					
	행정·환경·공업	1	1					
	운전	2	2					
	사무운영·전기운영	1	1					
7급	소 계	162	93	8	26	1	4	30
	행 정	22	18	3				1
	세 무	3	3					
	사회복지	4	2					2
	공업	1	1					
	농업	4	4					
	녹지	3	3					
	보건	2	1		1			
	의료기술	1			1			
	간호	4			4			
	보건진료	3			3			
	환경	1	1					
	시설	14	13				1	

행정·세무	5	2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사서	2	2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15	5					10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0	8		1		1	
행정·보건	3			3			
전산·방송통신	3	3					
보건·간호	7			7			
시설·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농업·환경	3						3
행정·농업·시설	8	6	2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사무운영	3		2				1
행정·운전·시설관리	1	1					
운전	8	5	1	2			
열관리·기계·전기운영	4	1		1		1	1
8급 소 계	147	75	3	30	0	5	34
8급 행정	17	15					2
8급 세 무	1	1					
8급 사회복지	3	3					
8급 농 업	4	4					
8급 녹 지	2	2					
8급 보 건	4			4			

	의료기술	5			5			
	간 호	11			4			7
	보건진료	5			5			
	환 경	2	2					
	시 설	5	4				1	
	행정·세무	7	3					4
	행정·사회복지	12	5	1				6
	행정·전산	3	2					1
	행정·공업	5	3				1	1
	행정·농업	11	8					3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4	2					2
	행정·시설	23	14				1	8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전산· 방송통신	2	1	1				
	보건·간호	4			4			
	보건·간호· 의료기술	6			6			
	운전	5	2	1	2			
	열관리·기계· 전기운영	2					2	
9급	소 계	81	57	1	5	1	1	16(1)
	행 정	13	9					4
	세 무	1	1					
	사회복지	4	4					
	녹 지	3	3					
	보 건	4	1		3			
	행정·세무	4	2					2
	행정·사회복지	12	5					7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2	8	1				3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6	15				1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 방송통신	1	1						

	행정·환경· 농지	1	1				
	보건·의기	2			2		
전문경력관계		1				1	
나군	농기계교관	1				1	
지도직계		29				29	
농촌지도관		3				3	
농촌지도사		24				24	
농촌지도사·농업공업		2				2	
연구직계		6	3			3	
연구사	기록연구	1	1				
	농업연구	3				3	
	학예연구	2	2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1.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팀장 직렬을 다양화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별 인력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의 팀장 직렬 변경(제2조 및 별표1)
 - 기획조정실 : 홍보팀장[행정 6급(감 1) ⇒ 행정·농업 6급(증 1)]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여성청소년팀장[행정·사회복지 6급(감 1) ⇒ 행정·세무·사회복지직 6급(증 1)]

장수군 규칙 제1196호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수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수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수군자원봉사센터소장(이하“센터소장”이라 한다)”을 “장수군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

은 조 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센터에는 센터소장 1인과 운영요원 4인”을 “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5명”으로 한다.

제4조 중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임용자격은”을 “임용자격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조 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면접심사 위원”을 “면접심사위원”으로, “3인”을 “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직원은 제4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채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제6조제1항 중 “센터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를 “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3항)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4항) 단서 중 “있으며, 최고 호봉은 10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센터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센터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
2. 사무국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3. 팀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

4. 사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

⑥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는 법인이 정한다.

제7조 본문 중 “센터직원”을 “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 ①장수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센터의 센터장과 자원봉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에는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그 밖에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의 임기)”를 “(운영위원회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운영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원봉사센터”를 각각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자원봉사센터”를 “그 밖의 센터”로 한다.

제14조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급기준은”을 “지급기준은 ”으로 한다.

제18조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급대장”“별지 제 3호서식”을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 5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제3조제2항 관련)

〈 기 구 〉



〈 업무분장 〉

구 분	업 무 분 장
센터장	○ 센터 업무총괄
사무국장	○ 직원 복무관리 ○ 대외협력 및 교류업무 ○ 예산 및 회계
기획관리팀	○ 문서 및 시설·비품·장비 등 재산관리 ○ 자원봉사자 및 활동수요처 모집, 배치, 관리 ○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 ○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관리
교육홍보팀	○ 자원봉사자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계획수립 ○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 홍보 및 출판물 간행 ○ 각종 행사

〈 정 원 〉

구 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 장	사 원	비고
인 원	6	1	1	2	2	

【별표 2】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 (제4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영 요 원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관련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관련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 8급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고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고졸 이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2급 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 고졸 이상으로 자원봉사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자원봉사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 개발학, 사회학, 행정학

【별표 4】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급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통비 : 3,000원 이내 - 급식비 : 8,000원 이내 - 간식비 : 2,000원 이내 ○ 활동용품비 : 실비

1. 개정이유

- 자원봉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요건, 보수 및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 상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 직원 정원 규정 개정 (제3조 별표 1)
 - (현행)센터장 1인, 운영요원 4인 → (개정)센터장 1명, 5명 이내의 직원
- 자원봉사센터 직원(사원) 임용자격 완화 (제4조 별표 2)
- 자원봉사센터 직원 보수 등의 관련 규정 개정 (제6조)
 - 상근직원 보수 규정 수정 및 최고호봉(10호봉) 기준 삭제
 - 자원봉사센터 법인 운영 관련 단서 신설
-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단가 현행화 (제16조 별표 4)
 - (현행)교통비, 식비 등 8,000원 → (개정)교통비, 식비 등 13,000원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운영규정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오탈자 등 수정

장수군 공고 제2022-253호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 장수군 산림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4조~제6조) 운영·관리, 운영시간 및 휴관일, 시설의 이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7조~제11조) 체험예약, 체험료, 체험료의 감면, 체험료의 반환, 세입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2조~제15조) 대장등의 비치, 보험가입,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산림과
(전화 : 063-350-2470, 팩스 : 063-350-5716)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담당자
(전화 : 063-350-24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치유의 숲 내에 설치된 치유센터, 테마숲, 치유 숲길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3.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내는 비용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림휴양법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룡리 산84-2, 산84-52 일원에 조성한 장수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관리 등) ① 치유의 숲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운영·관리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산림복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조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② 치유의 숲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 2.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시설물 이전·오손(汚損)·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
 7. 그 밖에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체험예약)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체험료 등)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②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2. 국가보훈대상자
3. 「주민등록법」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표 1의 체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마. 「장수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관광진흥법」 따른 산림휴양시설
및 관광지 당일 이용자

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제10조(체험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

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 전액 미반환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뺄 수 있다.

제11조(세입조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대장 등의 비치)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
 2. 치유의 숲 시설 관리대장(건강측정기 및 치유장비 등)
 3. 치유의 숲 근무일지
 4.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보험가입) 군수는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때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치유의 숲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파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료(제8조 관련)

구분	기준	체 험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산림치유프로그램	2시간 기준 (1인)	5,000원	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일괄 신청하는 일행을 말한다. - 장수군민 체험료 면제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장수군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특별한 재료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장수군 공고 제2022-288호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의 존속기한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2항에 따른 법정기한 5년에 초과 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의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을 “2026년 6월 30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3. 11. ~ 2022. 3. 31.(20일간)

다. 조례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3. 31.까지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견제출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서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기획조정실장)
- 2) 팩스 : 063)350-5702(발송 후 전화 확인, 전화 063)350-2047)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입법예고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의 참고 사항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존속기한) ----- 2026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부 칙 <제18545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한다.

장수군 공고 제2022-299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의 시행 및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의 시행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인「지방재정법」 일부가 「지방회계법」(법률 제14197호, 시행 2016. 11. 30.)으로 분법 되어 관련 조항 개정(안 제1조~제2조)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2. 1. 13.)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의 내용에 맞추어 관련 조항 개정(안 제 2조 제4호)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조항 신설(안 제5조2 제3항~제4항)
-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의무 조항 신설(안 제7조 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지방회계법(법률 제14197호, 2016. 11.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2019. 5. 9.)
-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3. 14. ~ 2022. 4. 3.(20일간)
- 다. 조례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4. 3.까지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견제출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서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 2) 팩스 : 063)350-5710(발송 후 전화 확인, 전화 063)350-2236)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입법예고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의 참고 사항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5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수는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된 경우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제3항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 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 은행의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군수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장수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금고”란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 ----- ----- ----- ----- 「지방회계법」 제38조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 위 하여 「지방자치법」 제159 조 ----- -----.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군과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제7조(금고지정 절차) ① ~ ④
(생략)

<신설>

제5조의2(군과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된 경우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 실적 중 최근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제3항1호의 전년대비 출연 규모란 직전 금고 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 은행의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금고지정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군수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및 예규

[지방회계법 발취문]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발취문]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지방자치법 발췌문]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발췌문]

1. 총 칙

[1] 목 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4]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영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1] 개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2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20조 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를 적용함
-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칭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1)	6. 기타사항(11) - 항목 가. 지역재투자 실적(3) - 세부항목 *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5) - 세부항목 *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금고 지정·운영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20년부터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가능 다. 0000(3)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 칭	조 례 또는 규 칙 안(예 시)
<p>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p> <p>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은 해당 감독관에게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관(금융원, 새마을금고장외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p>	<p>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p> <p>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은 해당 감독관에게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관(금융원, 새마을금고장외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순위 7.0점, 2순위 6.65점, 최저순위 4.2점)</p>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칭	조 례 또는 규칙안(예시)
<p>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5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p>* 경영지표 평가세부항목별 등급은 해당 감독안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안(공회원, 새마을금고 공회 등)의 기준에 따른</p> <p>*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일회하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처리 가능</p>	<p>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2) - 항목추가 <p>* 경영지표 평가세부항목별 등급은 해당 감독안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안(공회원, 새마을금고 공회 등)의 기준에 따른</p> <p>*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일회하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처리 가능</p>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p> <p>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p> <p>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p>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p> <p>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p> <p>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p> <p>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p> <p>× 추가배점 불가</p>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p> <p>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p> <p>× 금고점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p> <p>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p> <p>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p>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p> <p>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 추가배점</p> <p>× 금고점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p> <p>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 추가배점</p> <p>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 추가배점</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p>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p>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p> <p>*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p>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p>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p> <p>*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p> <p>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p> <p>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2점)</p> <p>*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p>	<p>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p> <p>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점)</p> <p>*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p> <p>×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p>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 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 3. 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 3. 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액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으로진규제법상의 기부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④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4]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 [5]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 [1]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

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재,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1]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2]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3]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1호, 2019. 5. 9.>

- 이 예규는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함

장수군 공고 제2022-300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예규 제 71호(2019. 5. 9. 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2019. 5. 9.)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3. 14. ~ 2022. 4. 3.(20일간)

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4. 3.까지[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의견제출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서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 2) 팩스 : 063)350-5710(발송 후 전화 확인, 전화 063)350-2236)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입법예고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의 참고 사항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1점)”을 “(27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10점)”을 각각 “(8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1점)”을 “(19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7점”을 각각 “6점”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6점”을 “5점”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건전성, 1점)”을 “(유동성, 2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점)”을 “(20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점)”을 “(7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점)”을 “(6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점)”을 “(21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점)”을 “(8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7점)”을 “(6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점)”을 “(7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2점)”을 “(25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점)”을 “(6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7점)”을 각각 “(8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점)”을 “(7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점)”을 “(2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점) ,	제4조(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① ----- ----- (27점) ----- ---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점) 가.·나. (생략) 다.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 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 ----- ----- (8점)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8점) -----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점) 가. (생략)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정성, 7 점)단, 지역조합에 대해 서는 순자본비율(안정 성)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 전성, 7점) 3) 자기자본이익율 (수익 성, 6점)	2. ----- (19점)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6점----- ----- 2) ----- 6점----- ----- 3) ----- 5점-----

<p>③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0점) <u>점)</u></p> <p>1.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가. (생략)</p> <p>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점) 가. (생략)</p> <p>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8점) 가. (생략)</p> <p>④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p> <p>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5점) 가. (생략)</p> <p>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가. (생략)</p> <p>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가. (생략)</p> <p>4. (생략)</p> <p>⑤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 능력 (9점)</p> <p>1. (생략)</p> <p>2.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4점) 가.·나. (생략)</p>	<p>③----- <u>(21점)</u></p> <p>1. ----- ----- (8점) 가. (현행과 같음)</p> <p>2. ----- <u>(6점)</u> 가. (현행과 같음)</p> <p>3. ----- ---- (7점) 가. (현행과 같음)</p> <p>④----- (25점)</p> <p>1. ----- -- (6점) 가. (현행과 같음)</p> <p>2. ----- (8점) <u>점)</u> 가. (현행과 같음)</p> <p>3. ----- ----- (8점) 가.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⑤----- ----- (7점)</p> <p>1. (현행과 같음)</p> <p>2. ----- (2점) 가.·나. (현행과 같음)</p>
---	---

관련법령 발췌문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발췌문]

1. 총 칙

[1] 목 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동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4]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동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1)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2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20조 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1)	6. 기타사항(11) - 항목 가. 지역채투자 실적(3) - 세부항목 * 금융위의 지역채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5) - 세부항목 *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금고 지정·운영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20년부터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가능 다. 0000(3)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항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은 해당 감독관에게서 각 지역조항 유형별(신형, 농·수·신원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관(금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항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은 해당 감독관에게서 각 지역조항 유형별(신형, 농·수·신원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관(금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순위 7.0점, 2순위 6.6점, 최저순위 4.2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칭	조 례 또는 규칙안(예시)
<p>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항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경영지표 평가 세부 항목별 등급은 해당 감독안에서 각 지역조항 유형별(신형,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안(공무원, 새마을금고 조합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p>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항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2) - 항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 항목별 등급은 해당 감독안에서 각 지역조항 유형별(신형,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안(공무원, 새마을금고 조합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p>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p>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 × 금고점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p>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 추가배점 × 금고점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 추가배점</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고객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p>	<p>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p>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 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 3. 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 3. 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④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4]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 [5]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 [1]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

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재,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1]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2]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3]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1호, 2019. 5. 9.>

- 이 예규는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함

장수군 고시 제2022-40호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목적 : 특용작물 재배(오미자 및 사과나무)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북 장수군 변암면 죽산리 산30-9번지
 - 면 적 : 4,880m²
3. 사업비 : 금89,420,000원
4. 사업기간 : 2020. 04. ~ 2022. 02.
5.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신규창출 및 증대
6. 사업시행자 : 장 재 영

장수군 고시 제2022-41호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목적 : 특용작물 재배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산60-1번지
 - 면 적 : 4,918m²
3. 사업 비 : 금23,340,000원
4. 사업기간 : 2017. 08.~ 2022. 03.
5.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신규창출 및 증대
6. 사업시행자 : 봉 승 아

장수군 고시 제2022-42호

장수 군계획시설(의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장수 군계획시설(공원)로 결정 고시된 의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장수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3월 14일

장 수 군 수

1. 장수 군계획시설(의암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의암공원	근린공원	장수읍 두산리 산2번지 일원	269,022	-	269,022	건설부고시 제1985-274호 (85.09.17)	장수 도시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

시설구분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비고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76,200	감)	7,178	269,022	5,193.8	증)	1,450.0	6,643.8	9,527.5	증)	1,450.0	10,977.5	
시설면적 총계	75,196	감)	318	74,878	5,193.8	증)	1,450.0	6,643.8	9,527.5	증)	1,450.0	10,977.5	
공통시설	27,440	감)	275	27,165	-	증)	1,450.0	1,450.0	-	증)	1,450.0	1,450.0	
조경시설	11,735		-	11,735	-		-	-	-		-	-	
휴양시설	3,795		-	3,795	-		-	-	-		-	-	
운동시설	1,529		-	1,529	-		-	-	-		-	-	
교양시설	22,713	감)	43	22,670	4,774.8		-	4,774.8	9,118.2		-	9,118.2	
편익시설	7,296		-	7,296	279.0		-	279.0	269.3		-	269.3	
관리시설	686		-	686	140.0		-	140.0	140.0		-	140.0	
기 타	201,004	감)	6,860	194,144	-		-	-	-		-	-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시설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비고
							건축비담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전체면적	-	-	-	276,200	감) 7,178	269,022	5,193.8	증) 1,450.0	6,643.8	9,527.5	증) 1,450.0	10,977.5	
시설면적소계	-	-	-	75,196	감) 318	74,878	5,193.8	증) 1,450.0	6,643.8	9,527.5	증) 1,450.0	10,977.5	
공통 시설	소 계			27,440	감) 275	27,165	-	증) 1,450.0	1,450.0	-	증) 1,450.0	1,450.0	
	-	도로	-	19,400	감) 275	19,125	-	-	-	-	-	-	
	1	모입광장	두산리 452-1	530	-	530	-	-	-	-	-	-	
	2-1	광장	두산리 401	6,545	-	6,545	-	증) 1,450.0	1,450.0	-	증) 1,450.0	1,450.0	
	2-2	광장	두산리 445-1	965	-	965	-	-	-	-	-	-	
조경 시설	소 계			11,735	-	11,735	-	-	-	-	-	-	
	3	그늘서령	두산리 445-1	35	-	35	-	-	-	-	-	-	
	4	잔디광장	두산리 445-1	5,148	-	5,148	-	-	-	-	-	-	
	5	비로원	장수리 126	1,615	-	1,615	-	-	-	-	-	-	
	6	동산	장수리 산15-8	200	-	200	-	-	-	-	-	-	
	7	의암동산	두산리 산1-1	4,737	-	4,737	-	-	-	-	-	-	
	휴양 시설	소 계			3,795	-	3,795	-	-	-	-	-	-
8-1		휴게광장	두산리 452	1,273	-	1,273	-	-	-	-	-	-	
8-2		휴게광장	두산리 408-2	185	-	185	-	-	-	-	-	-	
8-3		휴게광장	두산리 448-1	110	-	110	-	-	-	-	-	-	
8-4		휴게광장	두산리 400	178	-	178	-	-	-	-	-	-	
8-5		휴게광장	장수리 산15-8	2,049	-	2,049	-	-	-	-	-	-	
-		초정	-	-	-	-	-	-	-	-	-	-	
-		평의자	-	-	-	-	-	-	-	-	-	-	
-		원형의자	-	-	-	-	-	-	-	-	-	-	
운동 시설		소 계			1,529	-	1,529	-	-	-	-	-	-
	9-1	체력단련장	장수리 산15-8	80	-	80	-	-	-	-	-	-	
	9-2	체력단련장	장수리 산15-8	144	-	144	-	-	-	-	-	-	
	9-3	체력단련장	두산리 산3-1	1,075	-	1,075	-	-	-	-	-	-	
	9-4	체력단련장	장수리 산15-8	230	-	230	-	-	-	-	-	-	

시설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비고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교양 시설	소 계			22,713	감) 43	22,670	4,774.8	-	4,774.8	9,118.2	-	9,118.2	
	10	의암사	두산리 산3-1	10,217	-	10,217	284.6	-	284.6	284.6	-	284.6	
	11	천연대	장수리 700	110	-	110	9.0	-	9.0	9.0	-	9.0	
	12	층훈탑	두산리 산2	450	-	450	49.0	-	49.0	49.0	-	49.0	
	13	기념탑	두산리 산1-1	106	-	106	25.0	-	25.0	25.0	-	25.0	
	14	문화예술회관 (한누리전당)	두산리 466	9,333	감) 43	9,290	4,407.2	-	4,407.2	8,750.6	-	8,750.6	
	15-1	수변테크	두산리 402	443	-	443	-	-	-	-	-	-	
	15-2	수변테크	두산리 402	103	-	103	-	-	-	-	-	-	
	15-3	수변테크	두산리 452-1	136	-	136	-	-	-	-	-	-	
	15-4	수변테크	두산리 452-1	202	-	202	-	-	-	-	-	-	
	15-5	수변테크	두산리 730	19	-	19	-	-	-	-	-	-	
	15-6	수변테크	두산리 452-1	149	-	149	-	-	-	-	-	-	
	15-7	수변테크	두산리 402	137	-	137	-	-	-	-	-	-	
	15-8	수변테크	두산리 402	731	-	731	-	-	-	-	-	-	
	15-9	수변테크	두산리 402	168	-	168	-	-	-	-	-	-	
15-10	수변테크	두산리 452-1	151	-	151	-	-	-	-	-	-		
15-11	수변테크	두산리 452-1	258	-	258	-	-	-	-	-	-		
편의 시설	소 계			7,298	-	7,298	279.0	-	279.0	269.3	-	269.3	
	16-1	주차장	두산리 477-3	3,364	-	3,364	-	-	-	-	-	-	
	16-2	주차장	두산리 445-2	1,287	-	1,287	-	-	-	-	-	-	
	17-1	화장실	장수리 산16-2	138	-	138	32.0	-	32.0	32.0	-	32.0	
	17-2	화장실	두산리 475-1	287	-	287	35.0	-	35.0	35.0	-	35.0	
	17-3	화장실	두산리 445-1	274	-	274	90.0	-	90.0	90.0	-	90.0	
	17-4	화장실	장수리 115-1	150	-	150	-	-	-	-	-	-	
	18	전망대	두산리 산1-1	1,685	-	1,685	57.2	-	57.2	47.5	-	47.5	
	19	판매점	두산리 445-1	113	-	113	64.8	-	64.8	64.8	-	64.8	
	-	음수대	-	-	-	-	-	-	-	-	-	-	
	-	공중전화	-	-	-	-	-	-	-	-	-	-	
관리 시설	소 계			686	-	686	140.0	-	140.0	140.0	-	140.0	
	20	관리사무소	두산리 445-1	686	-	686	140.0	-	140.0	140.0	-	140.0	
	-	계시판	-	-	-	-	-	-	-	-	-	-	
	-	표지판	-	-	-	-	-	-	-	-	-	-	
	-	쓰레기통	-	-	-	-	-	-	-	-	-	-	
	-	가로등	-	-	-	-	-	-	-	-	-	-	
	-	전신주	-	-	-	-	-	-	-	-	-	-	
	-	국기계양대	-	-	-	-	-	-	-	-	-	-	
-	석교	-	-	-	-	-	-	-	-	-	-		
기 타	소 계			201,004	감) 6,860	194,144	-	-	-	-	-	-	
	-	저수지, 녹지	-	201,004	감) 6,860	194,144	-	-	-	-	-	-	

다.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 조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m)	면적(m ²)	노선	연장(m)	면적(m ²)	노선	연장(m)	면적(m ²)	노선	연장(m)	면적(m ²)
소로	기정	31	3,884	19,400	3	652	6,570	1	369	3,147	27	2,863	9,683
	변경	31	3,784	19,125	3	652	6,570	1	366	3,128	27	2,766	9,427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면적(m ²)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 계	31개노선					3,784	19,125					
기정	소로	1	1	6-14	국지도로	197	2,056	장수리 산16-3	두산리 451-4	일반도로		도로
기정	소로	1	2	10-15	국지도로	188	2,275	두산리 402	두산리 475-4	일반도로		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267	2,239	두산리 451-2	두산리 1061	일반도로		도로
소 계	소로1류(3개노선)					652	6,570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69	3,147	두산리 1049	두산리 1060	일반도로		도로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366	3,128	두산리 1049	두산리 1060	일반도로		도로
소 계	소로2류(1개노선)					366	3,128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30	2,056	두산리 산1-3	두산리 산15-21	일반도로		도로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330	2,052	두산리 산1-3	두산리 산15-21	일반도로		도로
기정	소로	3	2	5	특수도로	63	311	두산리 산1-1	두산리 산1-1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3	7	국지도로	91	605	두산리 산2	장수리 710	일반도로		도로
기정	소로	3	4	4	특수도로	88	552	장수리 산15-8	두산리 산2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90	292	장수리 산15-8	장수리 산15-8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6	3-6	국지도로	133	558	두산리 732	두산리 440	일반도로		도로
변경	소로	3	6	5-6	국지도로	53	352	두산리 441-1	두산리 441-1	일반도로		도로
기정	소로	3	7	3	국지도로	43	129	장수리 116-1	장수리 114-1	일반도로		도로
변경	소로	3	7	3	국지도로	41	123	장수리 116-1	장수리 114-1	일반도로		도로
기정	소로	3	8	4	특수도로	165	659	장수리 산16-3	두산리 477-1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9	4	특수도로	85	349	두산리 449-4	두산리 409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10	4	특수도로	160	640	두산리 400	두산리 733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14	2	특수도로	134	267	장수리 산15-8	장수리 산15-8	보행자전용도로		등산로
기정	소로	3	15	4	특수도로	48	201	두산리 산2	두산리 산1-1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16	3	특수도로	136	407	두산리 441-1	두산리 산3-1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17	3	특수도로	73	219	두산리 458	두산리 401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18	2	특수도로	161	322	두산리 408-2	두산리 458-2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19	2	특수도로	160	320	장수리 산15-8	장수리 산15-8	보행자전용도로		등산로
기정	소로	3	20	2	특수도로	33	66	두산리 408-2	두산리 409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21	2	특수도로	36	72	두산리 402	두산리 408-2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22	2	특수도로	21	42	두산리 402	두산리 728-40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23	2	특수도로	80	167	두산리 산1-3	두산리 산1-1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24	2	특수도로	87	174	장수리 139-4	장수리 산16-2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변경	소로	3	24	2	특수도로	72	134	장수리 산16-5	장수리 산16-2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25	2	특수도로	247	494	장수리 산15-8	장수리 산15-8	보행자전용도로		등산로
기정	소로	3	27	2	특수도로	41	82	두산리 400	두산리 399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28	2	특수도로	47	94	두산리 400	두산리 410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30	2	특수도로	148	248	장수리 710	장수리 115-1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31	2	특수도로	70	107	장수리 125-1	장수리 산15-8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기정	소로	3	32	2	특수도로	93	160	두산리 산2	두산리 산2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소 계		소로3류(27개노선)				2,766	9,427					

3. 군계획시설(의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 붙임 생략

장수군 고시 제2022-44 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고시**

장수군의회-2610(2022. 3. 15.)호로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15.

장 수 군 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2년 1차 추경	'22년 본예산	증 감 액	증감률	비고
계	439,915,959	431,344,761	8,571,198	1.99%	
일반회계	408,080,658	400,605,265	7,475,393	1.87%	
특별회계	31,835,301	30,739,496	1,095,805	3.56%	

□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계별	구분	'22년 1차 추경	'22년 본예산	증△감	비고
계		439,915,959	431,344,761	8,571,198	
일반회계		408,080,658	400,605,265	7,475,393	
특별회계		31,835,301	30,739,496	1,095,805	
상수도사업		5,359,768	5,359,768	0	
수질개선		6,423,649	6,362,444	61,205	
의료보호급여기금		456,265	456,265	0	
농공지구단지조성		200,000	200,000	0	
농촌소득사업운영		4,371,381	4,371,381	0	
하수도		13,532,738	12,498,138	1,034,600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491,500	1,491,500	0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